

문서등록인	
문서번호	산학협력- 2315
등록일자	20 20 . 1 . 21 .

국립무형유산원

총 장	지 시	결	부총장
접 일 자	2020. 01. 21	제	처 장
시 가		17549	팀 장
번 호			담 당
처 리 관	관 평 가 팀		
담 당 자	기 획 예 사 팀		
	교 등 226개		

수신 한국대학교협의회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226개 (경유)

제목 2020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 신규학교 선정 계획 알림

1. 귀 기관 및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 학교 교육의 연계로, 전승체계의 다변화 추구하고 미래 세대의 전통문화에 대한 진입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전승자 양성 및 전승 활성화를 목표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 신규학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2020년2월1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개요(세부내용 붙임)

- 1) 선정규모 : 신규학교 1개교 선정
- 2) 지원규모 : 150,000천원 이내 지원
- 3) 지원기간 : 총3차 사업연도(2020년~2022년) ※1년 단위 지원
- 4) 지원대상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명시된 학교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교육 개설학교 또는 개설 예정학교
- 5) 지원조건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전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전승자 교원 확보
 - (대학교) 1개 종목에 대한 3개 학년 총21학점 이상 교육과정 편성
 - (고등학교) 1개 종목에 대한 3개 학년 총38단위 이상 교육과정 편성
- 6) 지원내용 : 교원 및 전담인력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나. 신청방법

- 1) 신청기간 : 공고일~2020.2.10.(월) 18시까지(도착기준)
※사업설명회 개최 : 2020.1.30.(목) 14시 /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
- 2)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 3) 제출서류 : 전수교육학교 선정 신청서 등
※ 관련 서식은 문화재청(www.cha.go.kr) 또는 국립무형유산원(www.nihc.go.kr)

누리집 공지사항 확인

- 4) 접 수 처 : (우 551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도움마루 2층(동서학동)

다. 기타사항

- 1) 담당자 :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임승범 연구관, 정현철 주무관
- 2) 연락처 : (063)280-1461 / 280-1463

붙임 1. 2020년도 전수교육학교 선정 및 평가 계획 1부.
2. 2020년도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 1부. 끝.

국립무형유산원장



주무관 기안01/16 무형유산진흥 검토01/16 국립무형유산 결재01/20
정현철 과장 송민선 원장 김연수

협조자

시행 무형유산진흥과-183 (2020-01-20) 접수 상명-2020-13549 (2020-01-20)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 <http://www.nihc.go.kr>

전화번호 063-280-1463 팩스번호 063-280-1469 / hcjung74@korea.kr / 공개

2020년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신규학교 선정 및 평가 계획

1. 목 적

-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다변화와 미래 세대의 전통문화에 대한 진입 경로 제공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및 젊고 우수한 전승자 양성

2. 사업계획

- 선정규모 : 신규 1개교 선정(예정)
- 사업예산 : 370,000천원
- 사업방식 : 공모사업(간접지원) *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
- 지원규모 : 학교당 150,0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3년(2020년~2022년) * 1년단위 지원
- 지원대상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학교
- 지원조건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전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전수교육 가능 교원 확보
 - (대학) 1개 종목에 대한 3개 학년 총 21학점 이상 교육과정 편성
 - (고등) 1개 종목에 대한 3개 학년 총 38단위 이상 교육과정 편성
- 지원내용 : 교원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전수장학금 등
- 평가방식 : 1차(서면) 심사 및 2차(발표 또는 현장)심사 실시
- 평가항목 : 전수교육학교 육성 비전, 추진 의지 및 계획 등
- 평가절차 : 선정평가위원회 선정 평가 후 무형문화재위원회 최종심의

3. 선정 및 평가 일정 계획(안)

내용	일정	비고
▶ 사업 선정공고	2020. 1. 20.	문화재청 및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 사업 신청서 접수	~ 2020. 2. 10.	우편 및 방문접수
▶ 1차(서면) 선정 심사	2020. 2. 12. ~ 2. 14. 中 1일	선정평가위원회
▶ 2차(발표) 선정 심사	2020. 2. 17. ~ 2. 19. 中 1일	선정평가위원회
▶ 최종 선정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보고)	2020. 2월 말(미정)	무형문화재위원회
▶ 업무협약 체결	2020. 3월 초(미정)	

※ 지원학교가 3개 이하일 경우에는 1차 심사를 생략하고 2차 심사 실시('20.2.12.~2.19. 중 실시)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지원자격의 법적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 지원조건(자격)

- 신청 학교는 사업개시 시점에 전공학과에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전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 비정규 교과과정 비중은 30%이하로 편성 가능
- (대학)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해 3개 학년 총 21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수교육과정을 편성(계절학기 포함, 학기당 1-2과목 3-6학점 이상 편성)
- (고등학교)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해 3개 학년 총 38단위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수교육과정을 편성
- 신청 학교는 전수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년별 최소 5명 이상의 학생을 확보하여야 함 ※ 전승 취약종목은 학생수 확보 제한 없음
- 전수교육의 원활한 진행 및 성과 달성을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가능 교원 확보
 - 1종목 1인 이상의 전수교육 가능 교원을 보유하거나 보유계획이 있어야 함
 - 전수교육 가능 교원 자격 : 전수교육 실시에 적합한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5년차 이상의 이수자*, 보유단체에서 인정한 교육가능자
 - * 5년차 이상의 이수자는 문화예술관련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교육 및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자로 함
- * 전수교육학교 지원 학교는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한 지원규모 범위내에서 전수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전수교육 가능 교원을 확보해야 함. 단, 학교 자체 예산 및 대응부담금을 통한 다수종목의 전수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

○ 사업방식 : 공모사업

- (대학) 총장명의로 신청하며, 사업비 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
- (고등학교) 학교장이 신청하며, 사업비 관리는 학교 행정실 등에서 관리
- 선정규모 : 신규 1개교 선정(예정)
- 지원규모 :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 학교당 150백만원 이내
 - 선정학교 지원 가능액 : 150백만원 이내
 - 1개교 × 150백만원 = 150백만원
- * 지원규모는 상한액으로 학교 선정 후 예산에 맞춰 조정 협의 예정이며, 차년도 예산은 정부예산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 * 1학교 1종목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임
- 재정지원 내용

2020년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로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다변화와 미래 세대의 전통문화에 대한 진입 경로 제공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및 젊은 우수한 전승자 양성을 목표로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의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1월 일
국립무형유산원장

1. 사업목적

- 무형문화재 도제식교육과 학교교육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전수교육 모델 창출
-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다변화와 미래 세대의 전통문화에 대한 진입 경로 제공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및 젊은 우수한 전승자 양성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총3차 사업연도(사업기간 1년 단위로 구성)(2020년 ~ 2022년)
 - * 1차년도 : 2020년, 2차년도 : 2021년, 3차년도 : 2022년
 - *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계속 여부 결정
- 지원대상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교육 개설학교 및 개설 예정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 전통예술고등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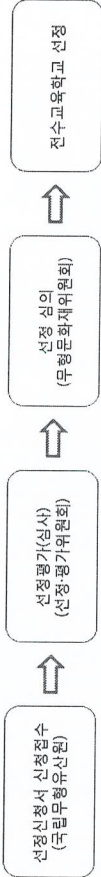
<표>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가구분	비고
I. 전수교육학교 육성 비전, 추진 의지 및 계획 (10)	1-1. 전수교육학교 육성 비전과 목표	2	정성	
	1-2. 전수교육학교 사업 추진 전략 및 의지	2	정성	
	1-3. 전수교육 시설 인프라 지원 및 확충, 학교의 대응 부담금 투자 계획	3	정성	
	1-4. 전수교육 운영에 적합한 행·재정 집행 계획	3	정성	
	2-1. 최근 3년간 전수교육종목 관련 교과과정 개설실적	5	정량	
	2-2. 전수교육종목의 3개년 전공 교과과정 개설계획	5	정성	
II. 전수교육종목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 (20)	2-3. 전수교육종목 전수교육 가능 교원 확보와 관련 교과과정 운영계획	5	정성	
	2-4. 취업 및 진로와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계획	5	정성	
	3-1. 전수교육학과 교원의 구성 및 역량	5	정량	
	3-2. 합리적인 선발 기준에 의한 학생 확보 계획	5	정성	
III. 구성원 및 운영체제 (25)	3-3. 다양하고 적절한 학생 지원 계획	5	정성	
	3-4. 전공 운영 형태 및 학점 또는 단위 이수 체계	4	정성	
	3-5. 전수교육을 위한 전수관계 구축 노력	3	정성	
	3-6. 전수교육의 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	3	정성	
	4-1. 전수교육종목 관련 연구 및 교재개발	5	정성	
	4-2. 전수교육종목 관련 각종 연수, 보급 및 확산 활동	4	정성	
IV. 전수종목 활성화 및 성과관리 (25)	4-3. 전통의 현대적 재창조를 위한 노력	5	정성	
	4-4. 무형유산 전수 관련 기관과의 협력	3	정성	
	4-5. 사업 성과지표	4	정성	
	4-6. 성과지표 달성전략 및 평가체제	4	정성	

- 전승자 교원 인건비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교재비, 실습재료비, 전수장학금 등 지원
- 사업혜택
- 전수교육학교 교과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해 전수교육 이수심사 기회 부여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심사 및 평가방법

- 심사 방법
 - 선정평가위원회 1차 심사 서면으로 실시(3배수 선정)
 - 1차 서면심사 결과 선정된 학교 대상 2차 심사로 발표심사 또는 현장심사 (필요시) 실시
 - 심사결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정
- * 지원학교가 3개 이하일 경우에는 1차 심사를 거치지 않고 2차 심사 실시
- 평가 방법
 - 심사위원별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실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고득점 순으로 신청 학교별 순위 결정
 - 점수결과 60점 미만은 “탈락” 으로 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
 - 전수교육학교 육성 비전, 추진 의지 및 계획
 - 전수종목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원 및 운영체제 등

[붙임 3]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 항목별 예산 집행 기준

구분	내용
1. 교원인건비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교육을 위해 1개월 이상 채용된 전수교육 가능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관련된 비용(정규과정으로 전임교원에 준한 자)
	집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사업비의 4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전수교육학교의 급여기준(규정, 지침 등)에 따른 인건비 지급 ■ 인건비에는 급여, 상여, 제수당, 법정부담금, 퇴직금을 포함 지급할 수 있음
	정산 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월별)
2. 강사료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교육을 위한 일회성 및 1개월 미만 단기로 전수교육 가능 교원 및 전문가 초청 특별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및 관련된 비용(비정규 과정으로 비전임교원에 준한 자)
	집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교육학교의 강사료지급기준(규정, 지침 등)에 따른 강사료 지급 ■ 강사료에는 세금을 포함 지급할 수 있음
정산 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강사료 지급확인서, 계좌입금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자체기준에 따라 필요 시 경력사항(이력서 등) 증명서 첨부
3. 전수교육학교 전담인력 인건비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교육학교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계약직 및 임시직 직원의 급여·상여 및 각종 수당 ■ 전수교육학교 사업 수행을 위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
	집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 채용 시 인건비는 3,0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전담인력 채용하지 않고 내부 직원을 활용 시 수당은 2명 이하로 지급 ■ 전수교육학교의 급여기준(규정, 지침 등)에 따른 인건비 지급 ■ 인건비에는 급여, 상여, 제수당, 법정부담금, 퇴직금을 포함 지급할 수 있음
정산 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월별)
4.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교육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등에 지출하는 비용과 그 부대비용 ■ 전수교육 교육과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 및 운영 등에 지출되는 비용과 부대비용 ■ 전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등에 지출되는 비용과 부대비용
	집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교육학교의 해당학과 및 담당부서가 참여하여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며, 외부기관에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지양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 (필요 시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전수교육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p>정산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입금증 (카드매출전표), 출장결과보고서
5. 교재 개발비	<p>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교육 교육과정 목적 달성을 위한 교재 개발 비용 <p>집행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사업비의 15%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전수교육 교육과정과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p>정산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입금증 (카드매출전표)(계약체결 시 계약에 필요한 서류)
6. 실습비 및 실습 재료비	<p>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교육을 위한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 및 실습에 필요한 재료 및 소모품 구입 비용 <p>집행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학과의 특수성에 따라 지출하는 전시회, 발표회 등 실습을 위한 경비 ■ 실습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용 <p>정산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입금증(카드매출전표)
7. 기자재 구입 및 운영비	<p>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교육에 필요한 기계기구, 집기비품, 실험실습 기자재 등의 구입비용 -기계기구 : 교육에 사용하는 컴퓨터, 강의실책상 및 가구 등 -집기비품 :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사무용기기 등 -실험실습 기자재 : 실습공구, 실습기구, 악기 등 ■ 기자재 유지보수 등을 위한 운영비용(수선 및 수리비 등) <p>집행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사업비의 3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에 맞는 기자재 구입 및 자체 기자재 구입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학

구분	내용
	<p>교의 자산관리대장에 등재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재 구입 시 교육·연구용 설비 및 기자재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자체 심의위원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비 집행 ■ 기자재 유지보수 등을 위한 필요경비에 한하여 집행하며 기자재별 유지보수 내역 작성 보관 <p>정산 증명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입금증(카드매출전표)(계약 체결 시 계약에 필요한 서류), 유지보수 내역서(물품수리요청서 포함) 등
8. 전수장학금	<p>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교육에 참여한 학생 중 우수 학생에게 지급되는 전수장학금 <p>집행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능 ■ 지급대상, 지급인원 및 지급시기 등은 선정된 학교에서 자체 지급 기준을 마련 ■ 지급액은 아래 제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대학)연간 45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1인당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고등)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1인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p>정산 증명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계좌입금증 등
9. 간접비	<p>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을 총괄관리하기 위한 운영 경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 <p>집행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국고지원금의 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지원사업 관리·운영을 위한 간접비는 학교별 예산 집행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 편성 집행) -학교의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운영 경비 등에 지출 <p>정산 증명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증 등